

『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출연 계획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2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2월 4일

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권 순 형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 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출연 계획
 - 출자·출연 예정액 : 금284,000천원
 - 출연 필요성
 - 한·미 FTA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 및 대응력을 강화
 - 출연근거법령 :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(기금의 조성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
-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○ 본 동의안은

한·미 FTA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조성·운영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FTA대책기금으로 확대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해 출연코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
 - 출연 예정액 : 금284,000천원

○ 검토결과

- 본 동의안은

한·미 FTA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조성·운영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FTA대책기금으로 확대 조성 운영함으로써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, 지역특화작목 육성, 농식품 수출, 귀농 지원 등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